

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

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- 호
기 획 재 정 부 고시 제2013 - 호
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 - 호
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 - 호
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 - 호
환 경 부 고시 제2013 - 호
국 토 교 통 부 고시 제2013 - 호
해 양 수 산 부 고시 제2013 - 호

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"녹색인증제 운영요령"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3년 7월 일

산업통상자원부 장 관
기 획 재 정 부 장 관
미래창조과학부 장 관
문화체육관광부 장 관
농림축산식품부 장 관
환 경 부 장 관
국 토 교 통 부 장 관
해 양 수 산 부 장 관

「녹색인증제 운영요령」 일부 개정

「녹색인증제 운영요령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의 녹색기술 인증을 위한 기술수준 “별표 4” 中 개정 대상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7조 제1항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녹색인증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녹색인증심의위원회(이하 “인증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

다. (이하 생략)

-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제10조의 녹색 인증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 제1항, 제2항,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-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전담 기관 및 평가기관의 해당업무와 관련된 본부장급 또는 단장급 보직자, 산·학·연 전문가 등 15인 내외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한다.
- 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
- 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위원이 장기 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1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-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녹색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(이하 “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야 한다.

제11조 제1항, 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- ①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녹색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,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제34조에 의한 녹색인증제 성과분석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-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인증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이하 “평가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
제1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-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제2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는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

한다.

제2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(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이하 “처리기간”이라 한다)에 인증 또는 확인 여부(녹색기술인증 취득 후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30일 이내)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2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경우 별표 3의 확인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 검토(녹색기술인증 후 녹색전문기업 확인 신청의 경우 즉시 검토하여야 하며, 전담기관은 확인여부를 30일 이내(초일은 산입하되,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)에 결정하여야 한다.) 또는 확인평가(현장평가)를 하여야 한다.

제30조 제6, 7, 8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⑥ 연장신청 녹색기술이 해당하는 별표4의 기술수준이 유효기간 내 동일한 경우에는 인증평가 및 확인평가를 생략하고 전담기관에서 검토 후 확정한다.

⑦ 제5항에 따라 인증평가 및 확인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를 3인 내외로 구성한다. 다만 확인평가의 경우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⑧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(초일은 산입하되,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)에 유효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제3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담기관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.

제3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이 요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,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.

제3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침, 기준 등을 고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녹색인증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)</p> <p>① 지식경제부 장관은 녹색인증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녹색인증심의위원회(이하 “인증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 (이하 생략)</p> <p>② 지식경제부 장관은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제10조의 녹색인증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녹색인증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)</p> <p>① <u>산업통상자원부</u> 장관은 녹색인증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녹색인증심의위원회(이하 “인증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 (이하 현행과 동일)</p> <p>② <u>산업통상자원부</u> 장관은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제10조의 녹색인증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/p>
<p>제8조(인증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 지식경제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해당업무와 관련된 본부장급 또는 단장급 보직자, 산·학·연 전문가 등 15인 내외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한다.</p> <p>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지식경제부 장관은 위원이 장기 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⑥ (생략)</p>	<p>제8조(인증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 <u>산업통상자원부</u>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해당업무와 관련된 본부장급 또는 단장급 보직자, 산·학·연 전문가 등 15인 내외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한다.</p> <p>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<u>산업통상자원부</u> 장관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동일)</p> <p>④ (현행과 동일)</p> <p>⑤ <u>산업통상자원부</u> 장관은 위원이 장기 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⑥ (현행과 동일)</p>
<p>제10조(녹색인증 전담기관)</p> <p>① 지식경제부 장관은 녹색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(이하 “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0조(녹색인증 전담기관)</p> <p>① <u>산업통상자원부</u> 장관은 녹색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(이하 “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동일)</p>
<p>제11조(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보고)</p> <p>①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녹색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, 이를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제34조에 의한 녹색인증제 성과분석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11조(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보고)</p> <p>①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녹색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, 이를 <u>산업통상자원부</u>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제34조에 의한 녹색인증제 성과분석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을 <u>산업통상자원부</u>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
<p>제14조(녹색인증 평가기관)</p> <p>① 지식경제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</p>	<p>제14조(녹색인증 평가기관)</p> <p>① <u>산업통상자원부</u>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</p>

현행	개정안
<p>의 장은 녹색인증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이하 “평가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기관의 장은 녹색인증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이하 “평가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(현행과 동일)</p>
<p>제18조(평가기관의 지정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<u>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8조(평가기관의 지정 등)</p> 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</p>
<p>제20조(평가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는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<u>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0조(평가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는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<u>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동일)</p>
<p>제24조(녹색인증 신청 및 처리기간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(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이하 “처리기간”이라 한다)에 인증 또는 확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24조(녹색인증 신청 및 처리기간)</p> 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(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이하 “처리기간”이라 한다)에 인증 또는 확인 여부(녹색기술인증 취득 후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30일 이내)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동일)</p> <p>④ (현행과 동일)</p> <p>⑤ (현행과 동일)</p>
<p>제26조(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경우 별표 3의 확인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검토 <u>또는 확인평가를 하여야 한다.(확인평가는 현장 평가로 실시한다.)</u>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26조(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)</p> 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경우 별표 3의 확인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검토(녹색기술인증 후 녹색전문기업 확인 신청의 경우 즉시 검토하여야 하며, 전담기관은 확인 여부를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.) 또는 확인평가(현장평가)를 하여야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	④ (현행과 동일)
<p>제30조(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(생략)</p> <p>⑥ 연장신청 녹색기술이 해당하는 별표4의 기술 수준이 유효기간 내 동일한 경우에는 인증평가 및 확인평가 생략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<u>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인증평가 및 확인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⑦ 제5항내지 제6항에 따라 인증평가 및 확인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를 3인 내외로 구성한다. 다만 확인평가의 경우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⑧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(초일을 산입하되,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)에 유효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</p>	<p>제30조(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)</p> 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(현행과 동일)</p> <p>④ (현행과 동일)</p> <p>⑤ (현행과 동일)</p> <p>⑥ 연장신청 녹색기술이 해당하는 별표4의 기술 수준이 유효기간 내 동일한 경우에는 인증평가 및 확인평가를 생략<u>하고 전담기관에서 검토 후 확정한다.</u></p> <p>⑦ 제5항에 따라 인증평가 및 확인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를 3인 내외로 구성한다. 다만 확인평가의 경우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⑧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(초일을 산입하되,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)에 유효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</p>
<p>제35조(전담기관의 지정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<u>지식경제부 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담기관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.</u></p>	<p>제35조(전담기관의 지정 등)</p> 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담기관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.</p>
<p>제36조(요령의 개정) 이 요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, <u>지식경제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.</u></p>	<p>제36조(요령의 개정) 이 요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,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.</p>
<p>제37조(세부사항의 고시) <u>지식경제부 장관</u>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침, 기준 등을 고시할 수 있다.</p>	<p>제37조(세부사항의 고시)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침, 기준 등을 고시할 수 있다.</p>

[별표 4]

녹색기술 인증을 위한 기술수준

02. 탄소저감

중분류	소분류	핵심(요소)기술	기술수준(안)
06 히트펌프	01 전기구동 히트펌프 (EHP, Electric Heat Pump)	VRF(Variable Refrigerant Flow System, 중앙공조와 시스템 에어컨) 시스템 기술	- 에너지소비효율 2등급 이상
09 에너지 다소비 기기 및 산 업공정 고 효율화	09 냉난방기기 고효율화 기술	냉난방기기 고효율화 기술	-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고효율기자재 인증 보유 또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획득

04. 그린IT

중분류	소분류	핵심(요소)기술	기술수준(안)
02 시스템 반도체	01 정보통신/가전 반도체	PLC 통신용 SoC 기술	[아래의 요소항목을 모두 만족할 것] - ISO/IEC 12139-1 표준 만족 - 소비전력 3.6W 이하

05. 그린차량·선박

중분류	소분류	핵심(요소)기술	기술수준(안)
02 저공해 고 효율 차량	02 신재생/저탄소 연료/ 대체 연료 자동차	친환경 CNG/HCNG차량 연료공급시스템 기술	[아래의 요소항목 중 1개 이상 만족할 것] - 동종 경유 자동차 대비 CO2 10% 이상 저감 - Euro-6 규제기준 만족
06 그린자전거	01 고 부가가치형 경 량자전거	구동장치 강도향상 기술	[아래의 요소항목 중 1개 이상 만족할 것] - 생활용 구동장치 : EN14764 : 20054.13항 요구사항을 만족하며, 크랭크세트(170mm, 3단기준, 바텀 브라켓 및 체인링 포함)중량 900gr이하, 허브내장 기어장치(3단기준)의 경우는 중량 1500gr 이하 - 생활용 구동장치 : EN14764 : 20054.13항 요구사항을 만족하며, 후륜용 허브내장기어 장치(3단기준)의 경우는 중량 1,300gr 이하, 후륜용 허브내장기어장치(5단기준)의 경우 는 중량 1,600 gr 이하 - 산악용 구동장치 : EN14766:20054.13항 요구사 항을 만족하며 크랭크세트(170mm, 3단기준, 바텀브라켓 및 체인링포함) 중량800gr이하 - 도로경기용 구동장치 : EN14781:20054.12항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크랭크 세트(170mm,2 단기준, 바텀브라켓 및 체인링 포함) 중량 700gr 이하

07. 신소재

중분류	소분류	핵심(요소)기술	기술수준(안)
10 광소자용 단 결정 소재	01 대구경 사파이어 단결정	대구경사파이어 단결정 용 알루미나 특성	[아래의 요소항목을 모두 만족할 것] - 순도 99.998%이상 - 8대불순물 각 3ppm 이하 - 밀도 3.0g/cm ³ 이상